



청렴한 LH, 『Let's go Higher』

부조리신고센터 : 031-738-7160~4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창2

12블록 국민임대아파트 • 1,534세대 •





총 1,534 세대	29 240세대	36A 242세대	36B 20세대	36C 514세대
36D 47세대	36E 15세대	36F 38세대	46 338세대	59 80세대

- 상기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도이므로 건물의 외관, 색채, 조경디테일은 안·하가 및 실제 사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통풍, 채광, 조망권 등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단지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일부 위치 이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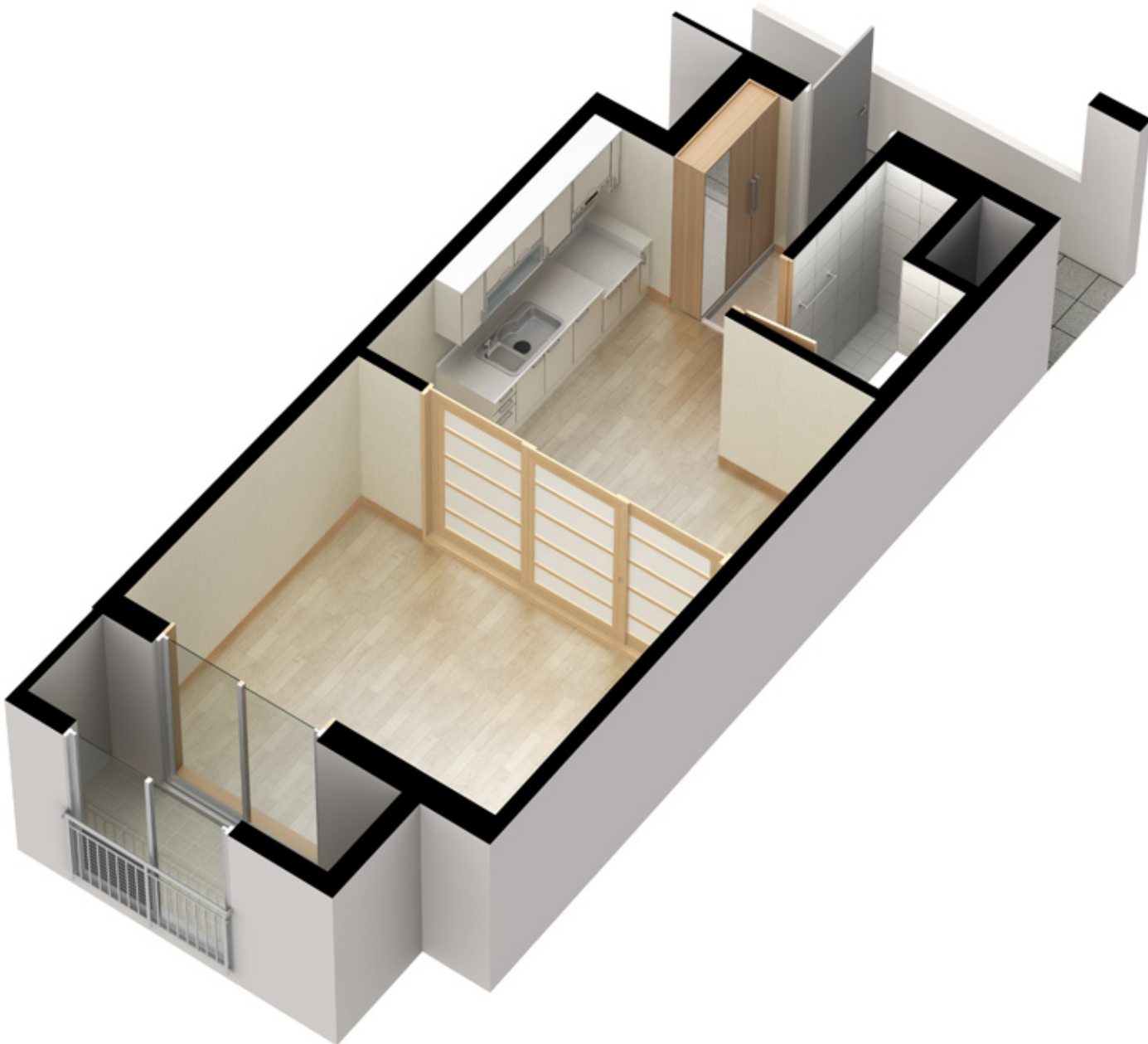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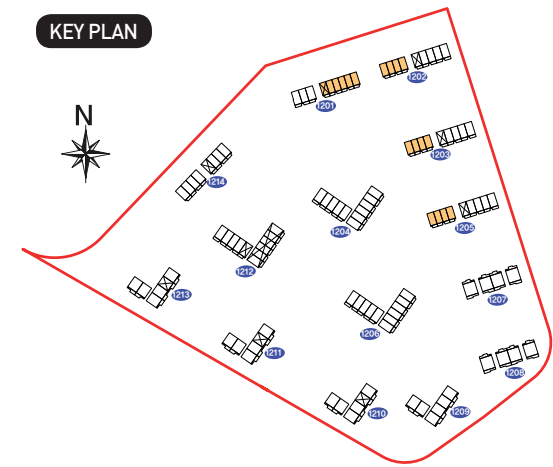
29

240세대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29.97 m ²
주거공용면적	14.316 m ²
공급면적	44.286 m ²
기타공용면적	1.348 m ²
지하주차장면적	14.367 m ²
계약면적	60.001 m ²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2.68 m ²
주방 / 식당	12.34 m ²
욕실	3.09 m ²
현관	1.86 m ²
계	29.97 m ²

서비스면적	
발코니	6.13 m ²
계	6.13 m ²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실내공간!

Housing Space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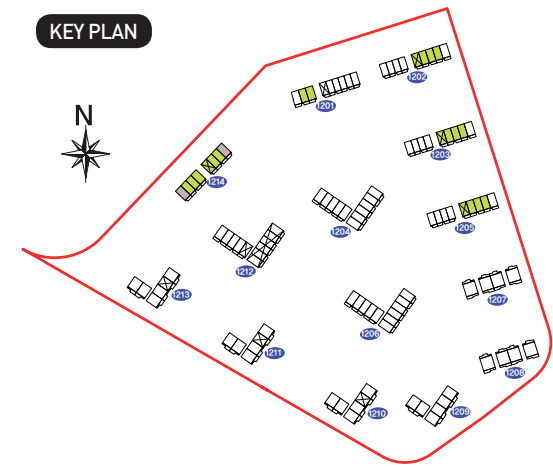
36A

36B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36.88 m ²
주거공용면적	17.617 m ²
공급면적	54.497 m ²
기타공용면적	1.659 m ²
지하주차장면적	17.680 m ²
계약면적	73.836 m ²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2.88 m ²
침실 2	7.13 m ²
주방 / 식당	12.04 m ²
욕실	3.31 m ²
현관	1.52 m ²
계	36.88 m ²

서비스면적		
36A	발코니 1	7.01 m ²
	계	7.01 m ²
36B	발코니 1	7.01 m ²
	발코니 2	3.51 m ²
	계	10.52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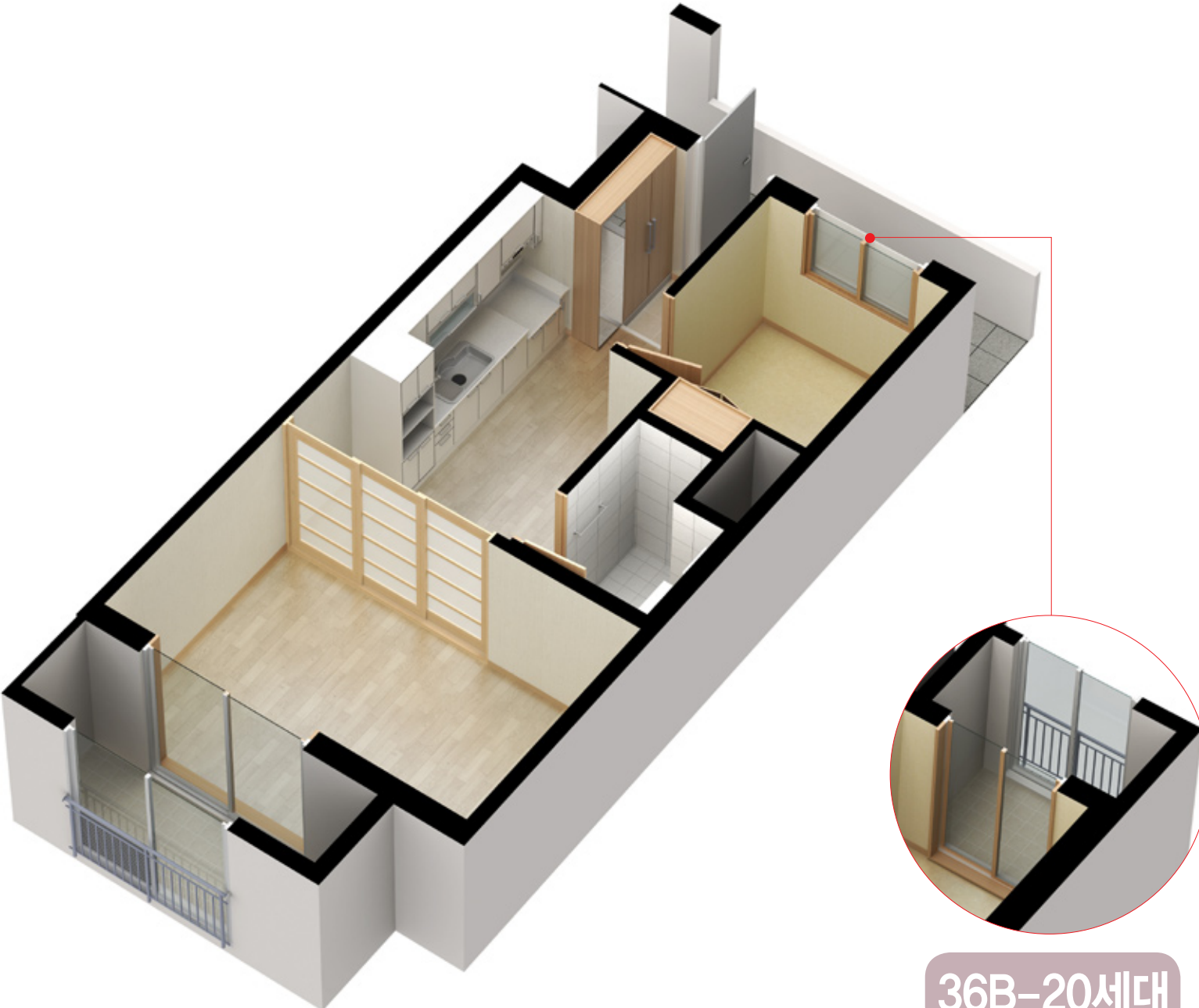
36A-242세대



36B-20세대
(측세대)

실용적인 공간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Housing Space



36B-20세대
(측세대)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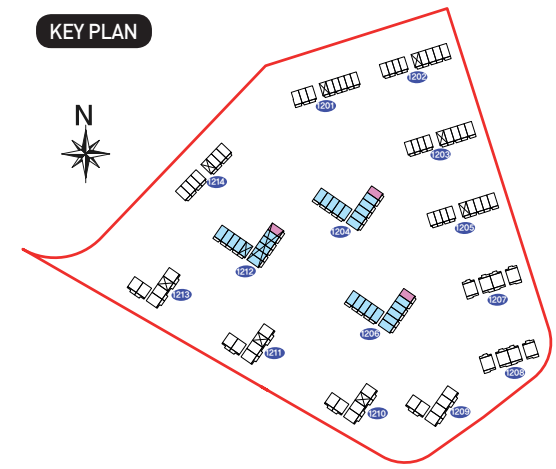
36C

36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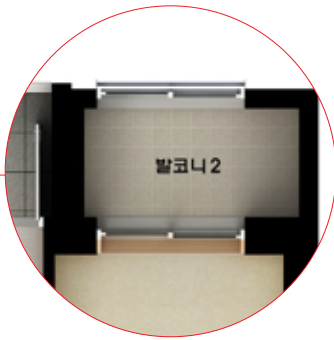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36.97 m ²
주거공용면적	17.660 m ²
공급면적	54.630 m ²
기타공용면적	1.663 m ²
지하주차장면적	17.723 m ²
계약면적	74.016 m ²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2.93 m ²
침실 2	7.13 m ²
주방 / 식당	12.07 m ²
욕실	3.32 m ²
현관	1.52 m ²
계	36.97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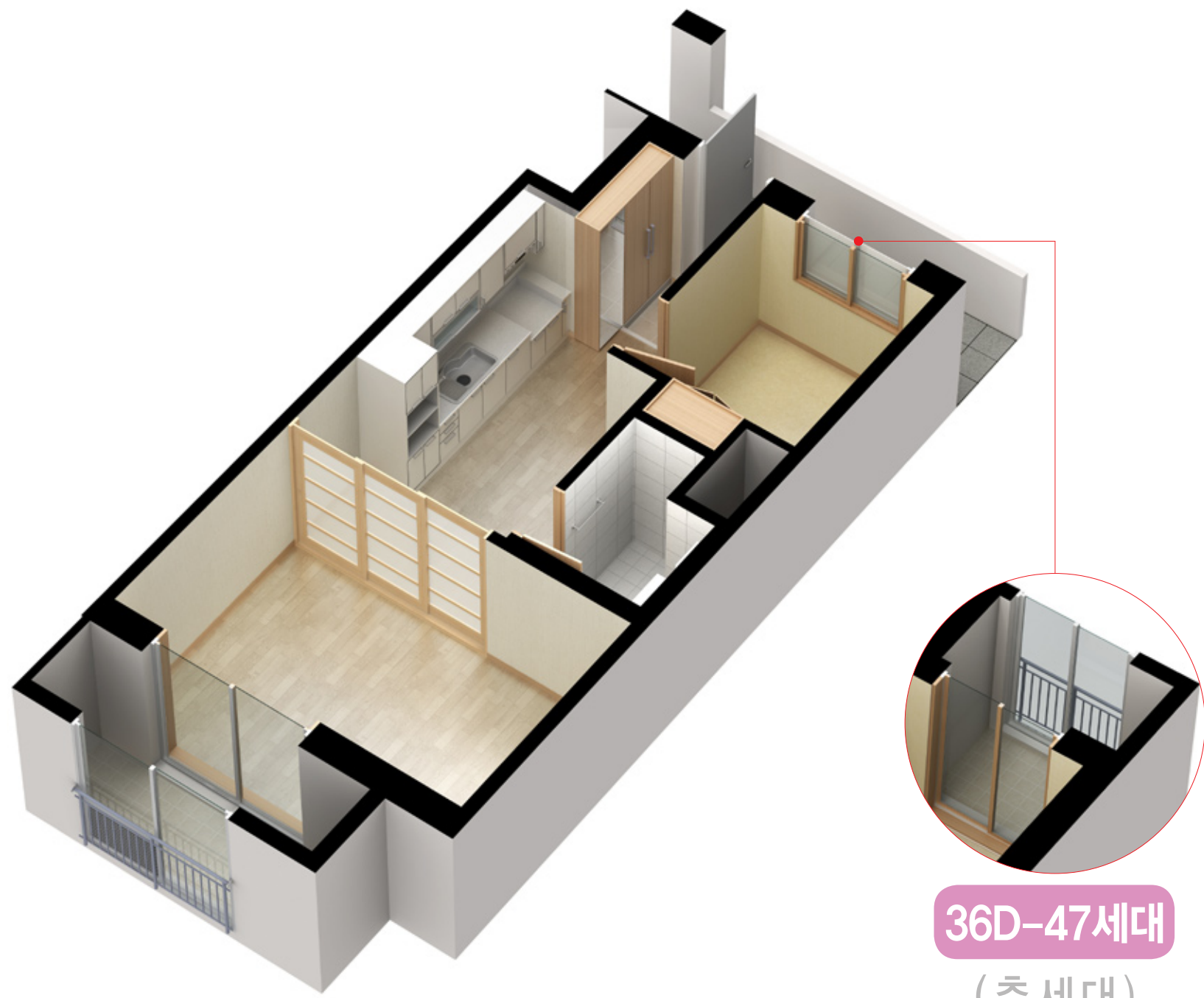
서비스면적	
36C 발코니 1	7.08 m ²
계	7.08 m ²
36D 발코니 1	7.08 m ²
36D 발코니 2	3.14 m ²
계	10.22 m ²



36C-514세대



36D-47세대
(측세대)



36D-47세대
(측세대)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36E

15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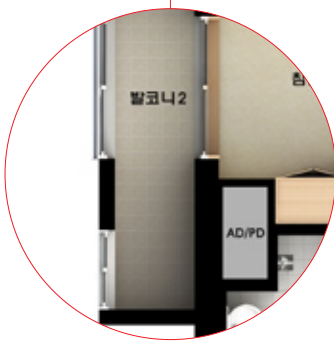
스마트하면서 알차고 쾌적함까지...

Housing Space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36.88 m ²
주거공용면적	17.617 m ²
공급면적	54.497 m ²
기타공용면적	1.659 m ²
지하주차장면적	17.680 m ²
계약면적	73.836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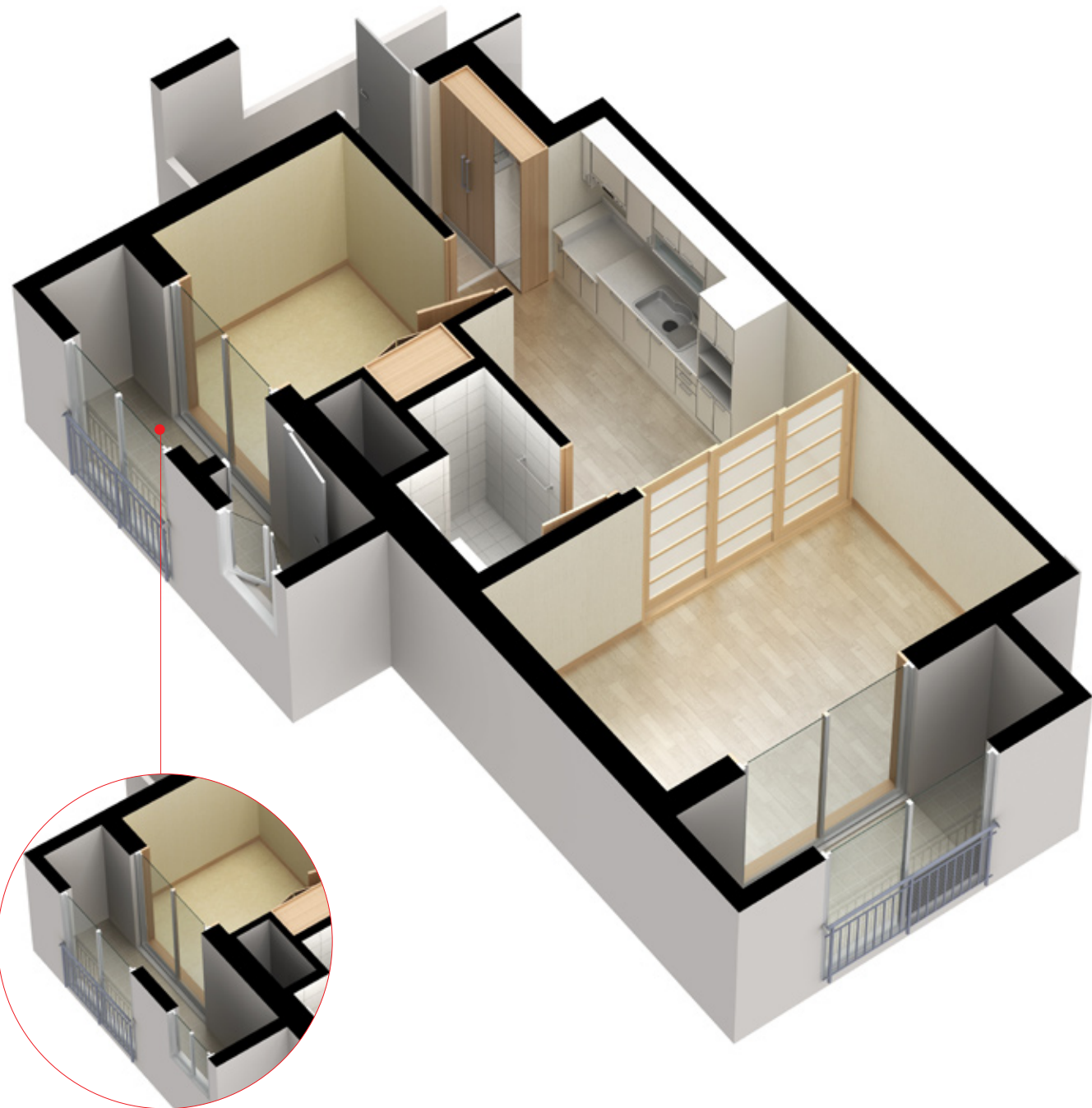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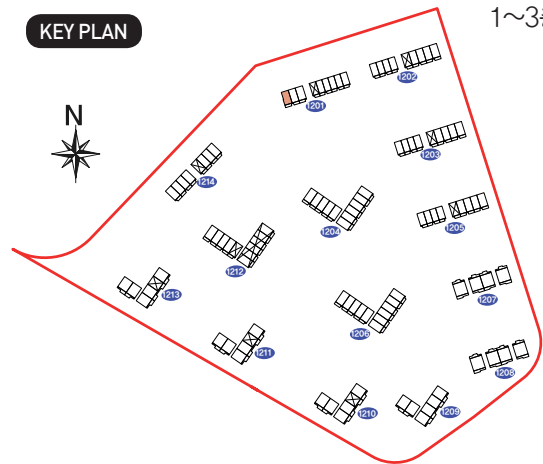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2.88 m ²
침실 2	7.13 m ²
주방 / 식당	12.04 m ²
욕실	3.31 m ²
현관	1.52 m ²
계	36.88 m ²

서비스면적	
발코니 1	7.01 m ²
발코니 2	6.93 m ²
계	13.94 m ²



1~3층 발코니공간(미서기 창)

KEY PLAN



1~3층 발코니공간(미서기 창)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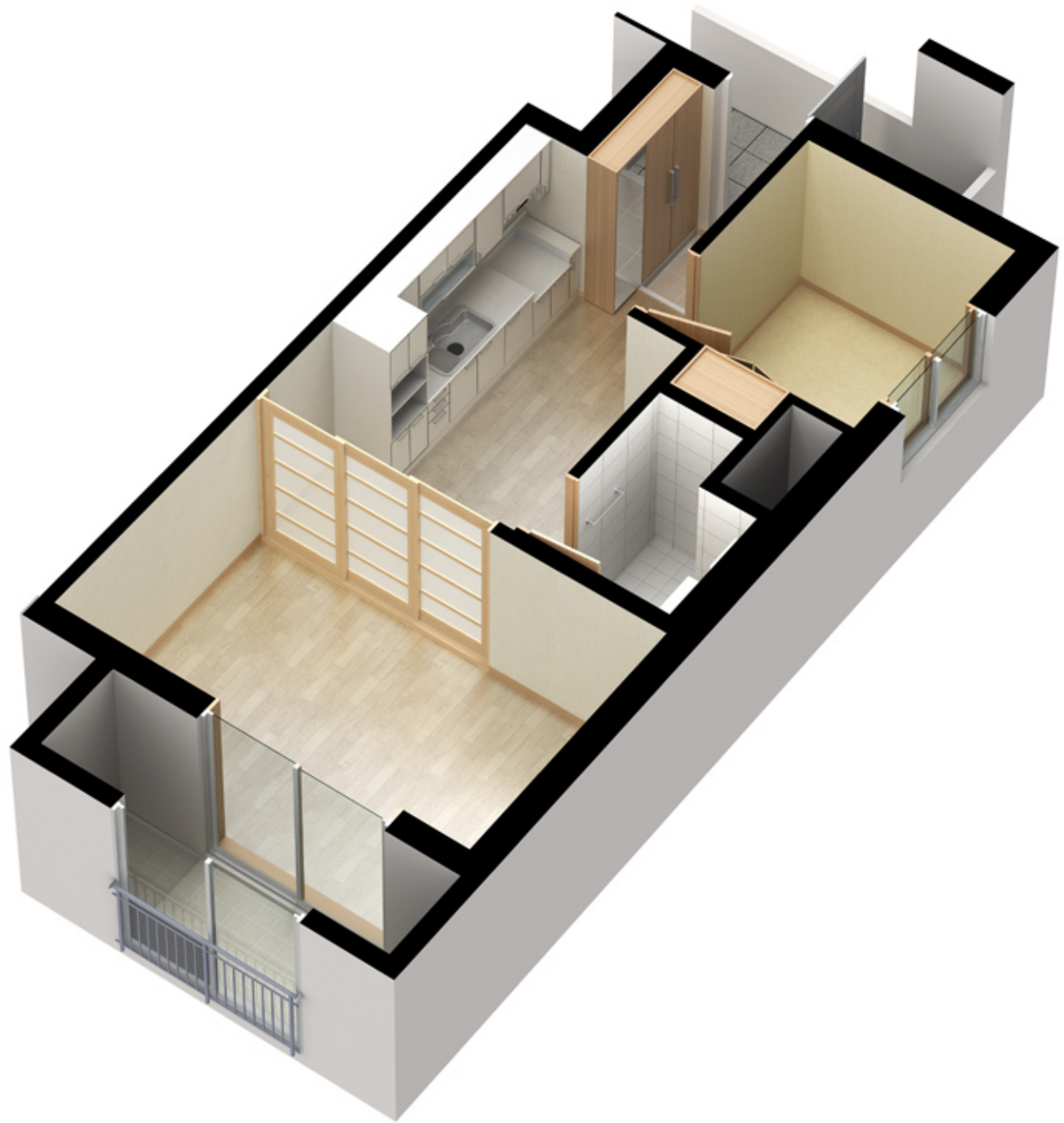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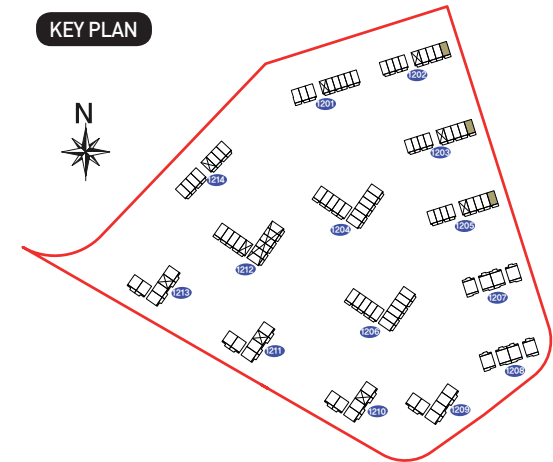
36F

38세대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36.88 m ²
주거공용면적	17.617 m ²
공급면적	54.497 m ²
기타공용면적	1.659 m ²
지하주차장면적	17.680 m ²
계약면적	73.836 m ²

실별면적	
거실 / 침실	12.88 m ²
침실 2	7.13 m ²
주방 / 식당	12.04 m ²
욕실	3.31 m ²
현관	1.52 m ²
계	36.88 m ²

서비스면적	
발코니 1	7.01 m ²
계	7.01 m ²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46

338세대

살수록 편안함이 느껴지는 공간구성!

Housing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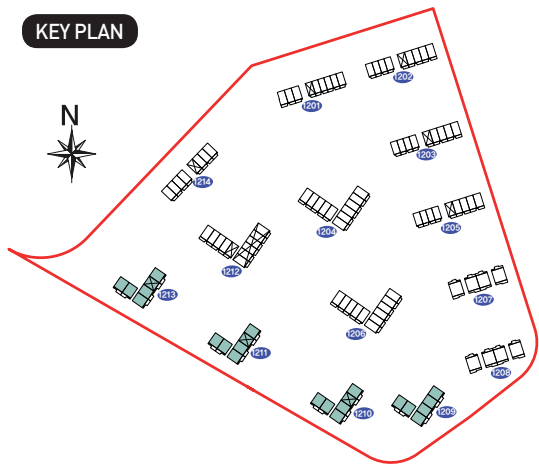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46.75 m ²
주거공용면적	22.332 m ²
공급면적	69.082 m ²
기타공용면적	2.103 m ²
지하주차장면적	22.411 m ²
계약면적	93.596 m ²

실별면적	
침실 1	8.32 m ²
침실 2	9.33 m ²
거실	8.32 m ²
주방 / 식당	15.09 m ²
욕실	3.40 m ²
현관	2.29 m ²
계	46.75 m ²

서비스면적	
발코니	9.63 m ²
계	9.63 m ²



KEY PLAN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59

80세대

더욱 여유롭고 넉넉해진 공간설계!

Housing Space

단위세대면적

전용면적	59.97 m ²
주거공용면적	28.647 m ²
공급면적	88.617 m ²
기타공용면적	2.697 m ²
지하주차장면적	28.749 m ²
계약면적	120.063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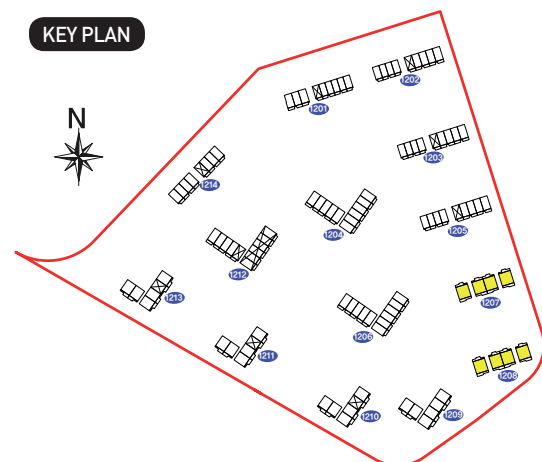
실별면적

침실 1	11.88 m ²
침실 2	7.21 m ²
침실 3	6.48 m ²
거실	13.20 m ²
주방 / 식당	15.95 m ²
욕실	3.55 m ²
현관	1.70 m ²
계	59.97 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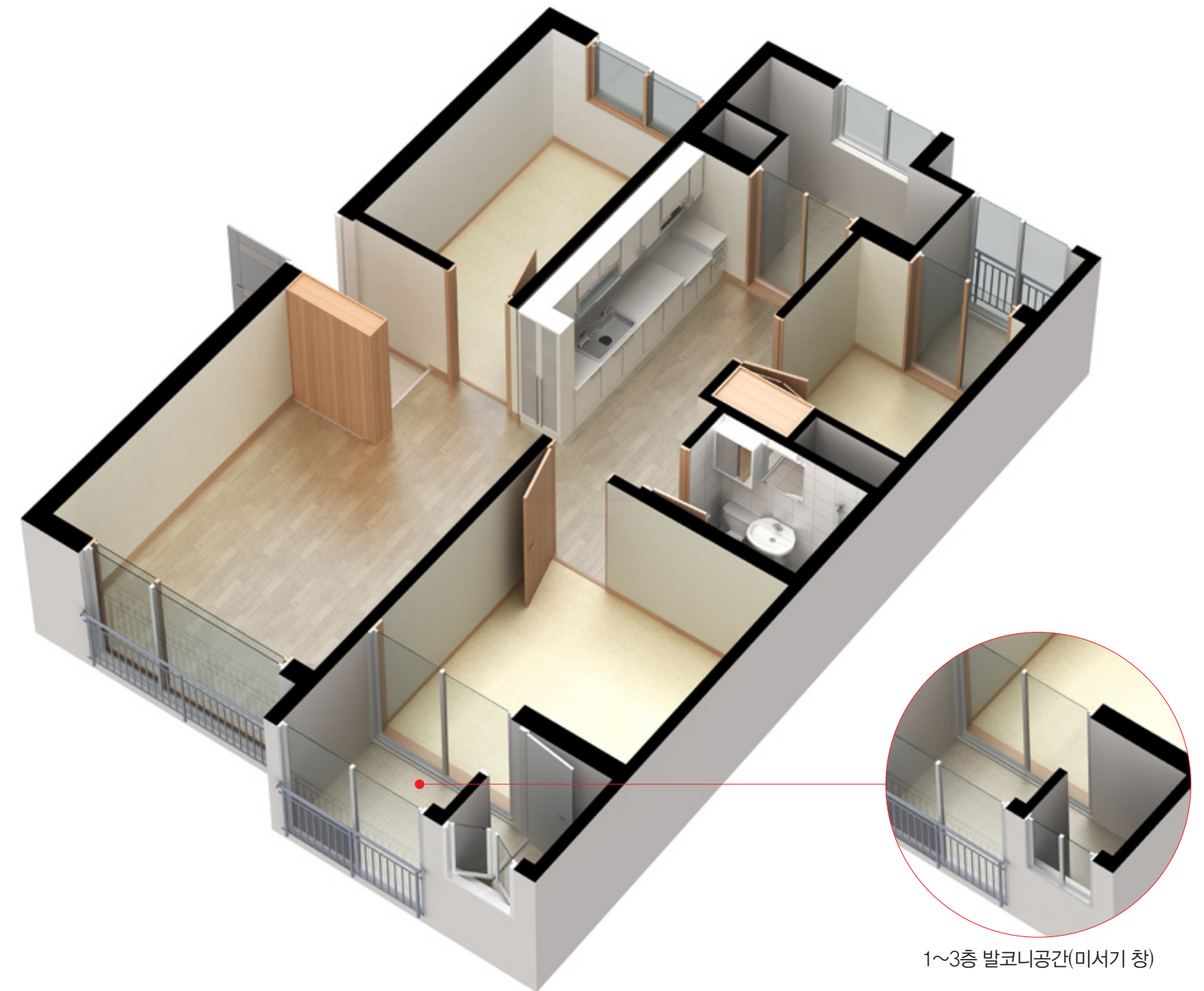
서비스면적

발코니 1	11.58 m ²
발코니 2	7.94 m ²
발코니 3	3.62 m ²
계	23.14 m ²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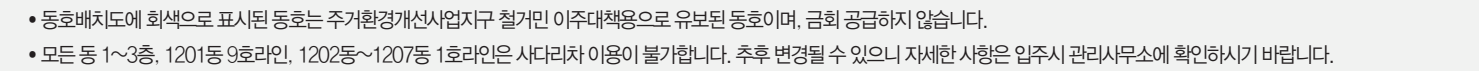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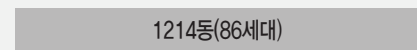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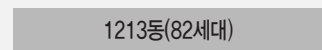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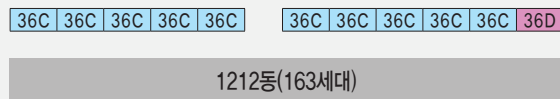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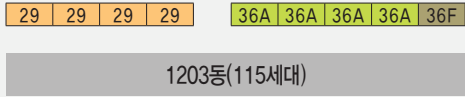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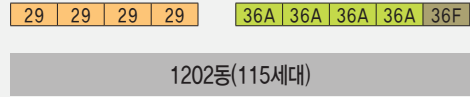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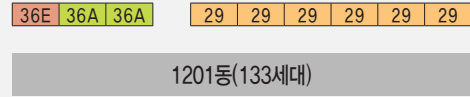
1~3층 발코니공간(미서기 창)



1~3층 발코니공간(미서기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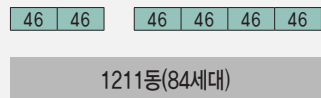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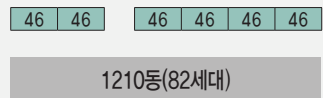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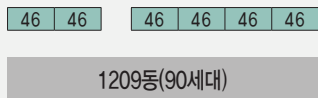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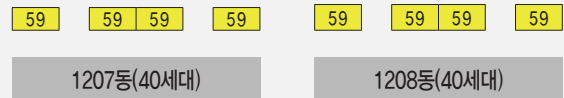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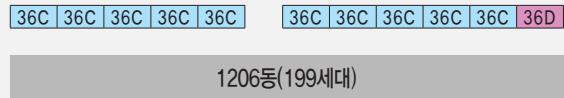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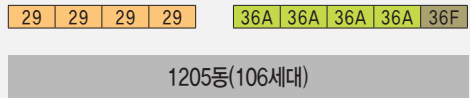
- 본 팸플릿에 표시된 평면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마감재의 형태, 재질, 색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면도의 배치구조는 호·라인에 따라 대칭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팸플릿(평면도)에 표시된 복도의 형태는 일부 타입에 국한된 것이며, 복도의 형태(너비)는 타입(판상형, 탑상형 등)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치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수치입니다.(평면도상의 수치는 벽체중심선 기준이며 발코니는 벽체외부 끝선 기준임)

동·호 배치도 / 주요마감재 시설내역



적용구분		설치기준
거실	바닥	PVC마루(3.0T)
	벽	실크지
	천장	발포지
침실	바닥	러그카펫(2.0T)
	벽	실크지
	천장	발포지
주방	바닥	PVC마루(3.0T)
	벽	도기질 타일
	천장	발포지
욕실	바닥	자기질 타일
	벽	도기질 타일
	천장	발포지
현관	바닥	자기질 타일
	벽	실크지
	천장	발포지
발코니	바닥	자기질 타일
	벽	수성페인트
	천장	수성페인트

※ 조립욕실(UBR) 적용됨



이젠 집안에서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세요!

인천서창(2) 12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 · 임대 청약시스템 → 인터넷청약(아파트) → “인터넷 청약신청” 클릭

※ 단, 당해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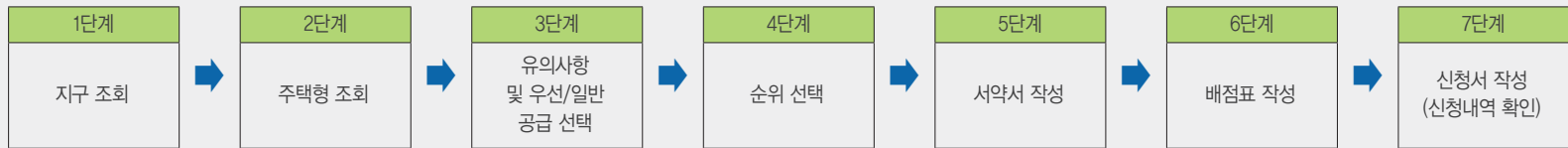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신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 신청에 관한 안내

■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발급 받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 인터넷 청약 서류제출 대상 선정자는 서류 제출기간(2012.11.5~6)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첨 제외됩니다.

● 인터넷 청약절차



● 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건설위치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2BL 국민임대주택 1,534호

II 임대대상 및 조건

신청 형태 (㎡)	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천원)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기타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29	29	29.97	14,316	15,715	60,001	234	188	46	1201~3, 1205	12,000	2,400	9,600	112	벽식, 지역 난방	'14년 5월
36	36A	36.88	17,617	19,339	73,836	853	688	165	1201~3, 1205, 1214	15,000	3,000	12,000	152		
	36B	36.88	17,617	19,339	73,836				1214						
	36C	36.97	17,66	19,386	74,016				1204, 1206, 1212						
	36D	36.97	17,66	19,386	74,016				1204, 1206, 1212						
	36E	36.88	17,617	19,339	73,836				1201						
	36F	36.88	17,617	19,339	73,836				1202, 1203, 1205						
46	46	46.75	22,332	3,7988	93,596	329	297	32	1209~11, 1213	27,000	5,400	21,600	190		
59	59	59.97	28,647	31,446	120,063	78	72	6	1207, 1208	41,000	8,200	32,800	284		

※ 신청은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태별로만 가능(36A, 36B 등으로 구분하지 않음)하며 1개 형별에만 가능함 (종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 총 건설호수는 1,534호이나 금회 1,494호만 공급함

III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9.28)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 이하 가구	2,974,030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 가구	3,303,5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3,450,450원 이하		
부동산	기 준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공시가격, 단, 건축물 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가액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농지법에 정한 농지로서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토지 [단,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자동차	기 준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 단, 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 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해당세대 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29형, 36형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형별 신청이 가능함.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46형까지 신청 가능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시 계약해지됨

신혼부부주택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신청자격 외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②혼인가간이 5년이내이고 ③혼인가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신청이 가능함.

-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2.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의 경우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임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임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 불법낙태 · 임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관련 진단서 등(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임양부부 임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양관계증명서

IV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제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 (신청, 당첨자발표, 계약)
	순위	소득금액	일자	시간				
29형 36형 46형	우선순위	70% 이하	’12.10.15(월)	– 현장접수 10:00 ~ 16:30 – 인터넷접수 9:00 ~ 17:00	발표 ’12.10.31(수) 16:00 서류제출 ’12.11.05(월) ~ 06(화) 10:00 ~ 16:00	’12.11.21(수) 16:00 ARS (031-710-7900)	’12.12.03(월) ~ 05(수) 9:30 ~ 15:30	LH 인천지역본부 논현사옥 1층 접수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9-1)
	1순위	50% 이하	’12.10.16(화)					
	2, 3순위	50% 이하	’12.10.17(수)					
	1, 2, 3순위	70% 이하	’12.10.18(목)					
59형	우선순위	70% 이하	’12.10.15(월)					
	1순위		’12.10.16(화)					
	2, 3순위		’12.10.17(수)					

V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 방법												
전용면적 50㎡ 미만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table><tr><th>순위</th><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3인 이하</td><td>2,124,300</td><td>2,974,030</td></tr><tr><td>4인</td><td>2,359,680</td><td>3,303,550</td></tr><tr><td>5인 이상</td><td>2,464,610</td><td>3,450,450</td></tr></table>	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124,300	2,974,030	4인	2,359,680	3,303,550	5인 이상	2,464,610	3,450,450
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 이하	2,124,300	2,974,030											
4인	2,359,680	3,303,550											
5인 이상	2,464,610	3,450,450											
전용면적 50㎡ 이상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연수구, 남구, 부평구 및 부천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 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우선공급됨(선정순서: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거주지는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 불인정)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 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인천시 남동구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인천시 남동구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사업지구 철거민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항)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 우선순위 신청접수일('12.10.15)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한)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재(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 「재단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재단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 장이 입주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북한이탈주민 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⑧ 소년·소년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 만 65세 이상 고령자 ⑩ 「아동복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외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남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⑯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3자녀 이상 가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미성년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7항)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④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8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계약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9항)	행정안전부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나(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0항)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 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단,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의 거주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③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태	철거민 (제32조 제4항)	공공규칙 제32조 제8항										3자녀 이상 (제32조 제8항)	국가 유공자 등 (제32조 제7항)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 (제32조 제8항)	비닐건이 공작물 거주자 등 (제32조 제8항)	신혼부부 (제32조 제10항)
		계	만 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 부양자	장애 인	장기 복무 재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한 부모 가족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남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29	13	44	7	4	12	2	2	2	4	7	4	24	24	7	4	72
36	39	170	26	17	43	8	8	8	17	26	17	87	87	26	17	262
46	51	63	10	6	16	3	3	3	6	10	6	33	33	10	6	101
59	20	20	2	2	4	2	2	2	2	2	2	6	6	1	1	18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배정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단,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해당세대 월 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한)

• 우선공급 대상자(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우선공급 제외)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전용면적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50% 이하 → 배점 합산순서(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 이상	배점 합산순서(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1962.09.29 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1972.09.29 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1982.09.29 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 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 20세 미만, 태아 포함)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1947.09.29 이전 출생)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1.09.28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 : 3점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⑤, ⑥, ⑨의 가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제4항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할증 부과함.

기준소득 초과비율	10% 이하	10%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임대조건 할증비율	10%	20%	40%

VI 신청서류

■ 공동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주민등록표초본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다음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인천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서류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1통
● 신청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중증장애인이 46형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비사업자확인각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서(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11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직장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음 항목 해당지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우선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참조) *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현 소속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근로내역이 있는 재일용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 제공중인 자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 · 파견 · 일용근로자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인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단,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⑩ 소년 ·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4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확인 각서	접수창소
	⑭ 이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동일순위 경쟁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⑮ 신희부주택 우선공급신청자(혼인기간 5년 이내, 자녀의 수, 임신사실 확인, 자녀의 출생신고일)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임양관계 증명서,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센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⑯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⑰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⑱ 남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남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이산가족과)
	⑲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①~③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재(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별면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인터넷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적격 심사서류 제출 안내	
인터넷 청약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아래 서류 제출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 제외됨을 유의하기 바람	
· 서류제출 기간 : 2012년 11월 5일(월) ~ 6일(화) 10:00~16:00	· 서류제출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논현사옥 1층 접수처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참조(공통 서류, 우선공급 및 배정확인서류, 추가 제출서류)	

VII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 · 호는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정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초기화면 중 “보양임대(차)상가형 → 아파트당첨자조회”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동호추첨 후 계약체결함(예비자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게시공고함)
 - 인터넷 청약자의 경우 서류제출대상 선정 후 서류 미제출시 향후 추정 제외됨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계약금 ②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대리계약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통 제출
 - 당첨 후 전산조회 결과 부적격자(유주택자,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초과자 등)로 통보될 경우 계약불가

VIII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기타공용면적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벌코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세시 설치에 따라 내 · 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사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 일정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 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 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영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영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도하지않을 경우 전부 무료 처리됩니다.
신청 서류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료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 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연락처 변경 및 위약금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영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하위임신 · 불발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가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패밀리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패밀리넷 기재된 제품은 계약자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일정건설이며 감리업체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운 세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방산-하중간도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국동방송수신소가 위치함에 따라 휴대전화, DMB 등의 통신장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IX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 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로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소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 내용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욕 실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고 령 자 지체장애인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 조정	지체장애인
주 방	좌식 싱크대(물비림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지체장애인
주 동 · 통로로도시설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 ※ 공청전진여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 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임대주택 당첨자 조회 ARS 031-710-7900
인 터 넷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2012. 09. 28